

간호학과 인사관리 운영세칙

제정 2026. 04. 13.

제1조(목적) 본 운영세칙은 경동대학교 (이하 ‘본 대학교’) 간호학과(이하 ‘학과’) 교직원의 합리적 인사관리와 교육·연구·봉사 역량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고, 전임교원 확보·수업시수·전공 교과목 담당 및 관리, 교수개발 및 신입교원 지원, 성과기반 인사관리 및 책무성 강화를 통한 교직원을 포함한 간호교육의 지속적인 질 개선(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이하 ‘CQI’)을 체계적으로 실현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학과 소속 교원의 임용, 평가, 복무 등에 관하여는 본 대학교 「교원 인사관리 규정」 및 「비전임 교원에 관한 규정」등에서 정한 사항을 우선 적용한다.
② 학과 전담직원은 본 대학교 「직원 인사 규정」, 조교는 「연구원 및 조교 임용·운영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① 교직원 인사관리는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직원 인사 운영은 간호교육 인증기준 및 학생의 학습성과 달성에 기여하도록 한다.
③ 교직원의 임상·교육·연구 역량은 정량·정성 지표에 근거하여 균형 있게 평가·관리하며, 그 결과는 교과목 배정, 교수 개발 및 인사 운영에 환류하여야 한다.

제4조(인사관리위원회 설치) 간호교육인증평가 인증기준에 근거하여 교원 인사관리 및 교과목 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간호대학 인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인 간호대학 학장과 부학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은 학과 전임교원 중에서 간호대학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간호대학장이 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학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자료관리 등을 위해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6조(위원회 임기) ①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의 임면 또는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과 전임교원 및 학과 교직원, 조교의 임용에 관한 사항
2. 비전임교원(강사 포함) 임용 및 재임용에 관한 사항
3. 학과 전임교원 승진 및 업적평가에 관한 사항
4. 간호교육 인증기준 충족을 위한 교원 확보 및 관리 사항
5. 교원의 교과목 변경에 관한 사항
6. 신입교원 지원(연구비, 교육프로그램, 멘토링 등) 계획의 수립·점검 사항
7. 보직교수의 활동 지원을 위한 제반 사항 계획 및 추진(책임시수 조정 및 리더십 개발 등) 사항
8. 교수개발 성과에 대한 점검 및 간호교육의 지속적인 질 개선(CQI)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9. 인증평가 및 대외평가 대응을 위한 교직원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0.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회의) 위원회 회의는 「간호대학 간호학과 운영 내규」 제18조에 따른다.

제9조(위원회 회의록) 위원회 회의록은 「간호대학 간호학과 운영 내규」 제19조에 따른다.

제10조(이해충돌·비밀유지) ① 위원은 심의 안전과 관련하여 개인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사전 고지하고 해당 안전 심의·의결에서 제척될 수 있다.

② 위원 및 간사는 심의 과정에서 취득한 비공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은 이해충돌 방지 및 비밀유지에 관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반 시 위원회는 필요한 조치를 학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1조(전임교원 자격기준) 전임교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로 한다. 단, 학과 교양 및 교직교과 담당자와 기 임용되어 소속이 변경된 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간호학 박사학위 소지자
2. 간호사 면허 소지자
3. 간호사 임상경력 3년 이상보유자(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 임용교원에 한함)
4. 담당 교과목에 대한 전공 적합자

제12조(비전임교원 및 강사 자격기준) 비전임교원 및 강사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로 한다. 단, 학과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자와 연구 실적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일부를 완화할 수 있다.

1. 간호학 석사학위 소지자
2. 간호사 면허 소지자

3. 간호사 임상경력 3년 이상 보유자
4. 담당 교과목과에 대한 전공 적합자

제13조(교수개발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① 전임교원은 연 1회, 8시간 이상 교수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 ② 전임교원은 교수역량 강화를 위해 1인당 연평균 100만원 이상 대학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③ 교수개발 프로그램에는 임상연수, 교수연수(교육역량), 연구역량 강화 연수 등을 포함할 수 있다.
- ④ 교수개발 지원을 받은 교원은 연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종합하여 차년도 교수개발 계획에 반영한다.
- ⑤ 교수개발 운영 실적은 연 1회 이상 성과평가 및 CQI 개선 자료로 활용한다.

제14조(전담직원 및 조교의 자격 및 업무) 학과 전담직원 및 조교의 임용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은 「간호대학 간호학과 운영 내규」 제26조에 따른다.

제15조(전임교원의 교과목 변경) ① 전임교원의 교과목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기준에 의한다.

1. 전임교원의 교과목 변경 심사 기준은 전공 적합성(박사학위 논문의 전공 관련성, 관련 교과목의 교육경력, 임상 및 산업체 경력, 최근 3년 이내의 논문 주제 및 실적 등)과 대학 및 학과 근무연수 등으로 한다.
 2.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시에는 위원회에서 기준을 조정하여 결정할 수 있다.
- ② 교과목 변경 심의 결과는 심의 기준, 판단 근거 및 결정 내용을 명시하여 문서로 기록·보관한다.

제16조(교원 배치 및 수업시수 관리) ① 전임교원의 교과목 배치 및 수업시수는 전공 적합성, 교육성과, 학과 운영 여건을 종합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 ② 수업시수 배정 결과는 형평성 및 인증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성과관리 및 CQI 체계) ① 학과는 교원 인사 및 교육 운영 전반에 대해 연 1회 이상 성과를 점검한다.

- ② 성과 점검 결과 및 개선 조치는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8조(준용) 본 운영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간호대학 간호학과 운영 내규」 제56조에 따른다.

제19조(운영세칙 개정) 본 운영세칙의 개정은 「간호대학 간호학과 운영 내규」 제57조 제2항에 따른다.

부 칙

본 운영세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2026학년도부터 적용한다.